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이병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48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5월 25일
발 의 자: 이병도 의원(1명)
찬 성 자: 김태수, 김혜련, 박순규,
서윤기, 양민규, 이승미,
이영실, 전석기, 채유미
의원(9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를 정의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법인·단체 및 기업, 창작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 창업 지원, 이전기업 등의 지원,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
- 마.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바.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
- 사. 사무의 일부를 위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또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및 기업, 창작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또는 임대료
2.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3. 첨단기술과 장비
4. 기술개발 및 제작지원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법인·단체의 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작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창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서울특별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술개발)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집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양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거나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개발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문화콘텐츠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촉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

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